< 사업방법서 별지 >

뉴-플랜

자 유 적 립 보 험

1. 보험종목의 명칭 : 뉴-플랜 자유적립보험

2. 가입연령 : 15 ~ 70세

3. 보험기간 : 종신

4. 보험료 납입기간 : 80세

5. 보험료 납입주기 : 월납

6. 보험가입금액 한도 : 500만원 이상

7. 납입보험료의 한도
   계약시점의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와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수시로 납입하는 추가납입보험료를 합한 총납입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의 10배 이내로 한다.

   단, 기본보험료는
   ?? 가입연령 15 ~ 50세 : 보험가입금액의 1% ~ 5%
   ? 가입연령 51 ~ 60세 : 보험가입금액의 2% ~ 5%
   ?? 가입연령 61 ~ 70세 : 보험가입금액의 4% ~ 5%
   로 한다.

8. 부가하는 특약
   정기특약, 암관련특약, 성인병관련특약, 유족연금특약, 재해관련특약, 입원관련특약, 단체취급특약, 특별조건부특약, 생활보장관련특약, 휴일재해보장특약, 종합건강보장특약, 연금전환특약

9. 기 타

가. 보험료의 납입에 관한 사항

제2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기간 중 이 계약의 수금방법에 따라 기본보험료 이상의 금액을 수시로 납입할 수 있으며 해약환급금에서『해당월의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수금비 제외) 및 특약보험료(수금비 제외)의 합계액』(이하 ?월대체보험료?라 함)을 충당할 수 있으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단,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회사에서 정한 총납입보험료 한도를 초고할 경우에는 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다.

나.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에 관한 사항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은 해약환급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월계약해당일로부터 그 월계약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으로 한다.

다.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1개월부터 피보험자 연령 만80세 계약해당일 이전까지 다음 각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해약환급금의 범위내에서 적립액을 인출할 수 있으며, 인출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5%로 한다.

(1) 계약자가 퇴직한 경우
(2) 계약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또는 휴업
(3) 계약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폐업
(4) 계약자가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꾜양을 요하는 상해 또는 질병 발생시
(5) 계약자가 소득이 감소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
(6) 기타 계약자가 가계생활자금, 학자금 또는 노후생활자금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적립액의 인출이 필요한 경우. 단, 이 경우 적립액의 인출은 해약환급금의 25% 범위내에서 보험년도 기준 연1회에 한함.

라. 공시이율의 계산에 관한 사항

공시이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적용한다.

(1) 공시기준이율은 한국증권업협회가 공시하는 3년만기 회사채수익률(이하 ?회사채수익율?이라 한다)과 전년도 수입보험료 기준 상위 5개 생명보험회사의 금리에 연동되지 않는 상품의 산술평균 약관대출이율(이하 ?약관대출이율?이라 한다)과 전년도 수입보험료 기준 상위 5개 생명보험회사의 총자산수익율(이하 ?총자산수익률?이라 한다)을 가중평균하여 연 2회 보험개발원이 산출 공시한다.

(2) 공시기준이율 산출에 관한 사항

?공시기준이율 = A1 × 0.2 + A2 × 0.3 + A3 × 0.5 - B

A1 : 회사채수익률의 직전 6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A2 : 약관대출이율의 직전 6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A3 : 직전사업년도의 총자산수익률
B : 1%(Safety Margin)

$$? \text{가중이동평균이율}(Ai) = \frac{Mi(-3) + Mi(-2) \times 2 + Mi(-1) \times 3}{12}$$

회사채수익률 및 약관대출이율에 대하여
Mi(-3)은 직전 5~6개월,
Mi(-2)은 직전 3~4개월
Mi(-1)은 직전 1~2개월 이율

(3) 공시기준이율의 80% ~ 110% 범위내에서 연 2회(매년 1월1일, 7월1일) 회사가 정한 이율을 공시이율이라 한다. 이 공시이율은 6개월간 확정 적용한다.

(4) 공시이율은 연복리 5%(일복리 0.013368%)를 최저한도로 한다.

마. 해지계약이 부활에 관한 사항

해지된 계약의 부활시 계약자는 연체보험료(해약환급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날로부터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기본보험료. 단,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와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공시이율을 적용하며, 공시이율이 연체기간 중 변경될 때에는 기간가중 평균한 이율로 한다.

바. 약관대출이율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은『공시이율 + 1.5%』로 하고, 약관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한다.

사. 동보험의 자산은 일반보험의 자산과는 별도로 구분계리하여 운영한다.